

강원도립대학교 실습선 관리규정

(제정) 2000-06-05 규정 제072호
(개정) 2002-07-02 규정 제130호
(개정) 2004-04-30 규정 제147호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61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81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6-09-05 규정 제41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정의) “실습선”이라 함은 학생 승선실습 및 연구조사를 위한 강원도립대학교 부속시설인 선박(탐양호)를 말한다.<개정 2016.4.25.><개정 2016.9.5.>

제3조(적용범위) 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기능) 실습선은 학생 승선실습, 연구조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한다.

제5조(조직 및 임무) ① 실습선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선장 및 기관장을 둔다.

② 선장 및 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유자격 자에 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2.10.15>

③ 선장은 실습선을 대표하여 실습선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기관장은 기관부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관리) 실습선 관리는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.><개정 2016.9.5.>

제7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습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, 해양경찰과·해양생명과학과 학과장, 실습선(탐양호) 선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수 있다. <개정 2010.5.3> <개정 2012.10.15.><개정 2016.4.25.><개정 2016.9.5.>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사무국 실습지원담당으로 한다.<개정 2012.10.15>

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실습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생 승선실습을 위한 기본 운항계획에 관한 사항
3. 연구조사를 위한 운항계획에 관한 사항

4. 실습선의 신조 및 개조 계획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실습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지침) 실습선의 관리 및 운영과 승무원이 준수해야 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(2000. 6. 5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강원도립대학실습선규정(규정 제34호 : 1998.7.13)은 폐지한다.

부 칙(2002. 7. 2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4. 30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9. 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